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69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2.

제출자 : 달성군



1. 제안이유

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기금의 운용관 및 출납원을 변경하여 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운용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(2022. 2. 3.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되어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체육발전에 기여한 개인·단체들의 포상근거를 기준을 구체화 하여 포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(안 제10조제3항)
- 나. 기금심의운용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의 명칭 변경(안 14조제3항)
- 다. 체육진흥기금의 기금 운용관, 기금 출납원을 담당 부서장 및 담당 팀장으로 변경(안 제17조제1항제1호)
- 라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21조제3항)
- 마. 체육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관한 중복조항 삭제(안 제21조제2항)
- 바. 체육발전 유공자들에 관한 포상 조례 변경(안 제28조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(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

(2)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2. 9. 10.~ 9. 30.) 결과 :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2022년 12월 31일“을 ”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전단 중 “정책관광국장”을 “기금 담당 국장” 으로 하고, “문화체육과장”을 “기금 담당 부서장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제1호 중 “정책관광국장”을 “기금 담당 부서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체육진흥담당 팀장”을 “기금 담당 팀장” 으로 한다.

제19조제3항 중 “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.

4. 체육단체 추진 사업의 필요 경비

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군수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성군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
1.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
2. 사무실 운영 경비
3. 사무실 임차료
4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

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8조(포상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으로써 군의 체육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1. 전국체육대회·전국 장애인체육대회·전국 소년체육대회 입상
2.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주최·주관 전국단위대회 입상
3. 대표 선발전을 통한 군 또는 대구광역시의 대표로 전국단위 대회 입상
4. 그 밖에 군의 체육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기금의 설치) ① ~ ② (생략)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2년 12월 31일까지</u> 로 한다.	제10조(기금의 설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2027년 12월 31일</u> -----.
제14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~ ② (생략) ③ 위원장은 부군수, 부위원장은 <u>정책관광국장</u> 이 되며, 위원은 <u>문화체육과장</u> 및 기금운용과 체육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계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,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14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기금 담당 국장</u> ----, ---- <u>기금 담당 부서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7조(회계공무원) ① (생략) 1. 기금운용관 : <u>정책관광국장</u> 2. 기금출납원 : <u>체육진흥담당 팀장</u>	제17조(회계공무원) ① (현행과 같음) 1. ----- : <u>기금 담당 부서장</u> 2. ----- : <u>기금 담당 팀장</u>

② (생략) 제19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 ~ ② (생략) ③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 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 제21조(경비의 지원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략) 4. <u>체육단체 추진 사업의 필요 경비 및 사무실 운영 경비</u> 5. <u>체육단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</u> 6. ~ 14. (생략) <u><신 설></u>	② (현행과 같음) 제19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--. 제21조(경비의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체육단체 추진 사업의 필요 경비</u> 5. <u><삭제></u> 6. ~ 14. (현행과 같음) ③ 군수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 18 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성군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 1.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 2. 사무실 운영 경비 3. 사무실 임차료 4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
---	---

제28조(포상) <u>군수는 군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</u>	제28조(포상) ① <u>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으로써 군의 체육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</u> 1. <u>전국체육대회·전국 장애인체육대회·전국 소년체육대회 입상</u> 2. <u>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주최·주관 전국단위대회 입상</u> 3. <u>대표 선발전을 통한 군 또는 대구광역시의 대표로 전국단위 대회 입상</u> 4. <u>그 밖에 군의 체육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② <u>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조례」를 준용한다.</u>
--	---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시행령

제4조(기금의 지출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5. 12. 10.>

② 기금운용관(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)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10.>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2. 10., 2017. 7. 26.>

[제목개정 2015. 12. 10.]

□ 국민체육진흥법

제18조(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)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한국도핑방지위원회,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, 스포츠윤리센터,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. <개정 2020. 2. 4., 2020. 12. 8.>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0. 12. 8., 2022. 2. 3.>